

## 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-60호

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「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」 제10조제3항제3호, 「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, 「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-23호, '14. 12. 4.)」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30일  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###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

#### 1.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(자격기준)

- (방송사업자단체 부문)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하는 단체
- (학술단체 부문)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
- (비영리민간단체 부문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하는 단체

#### 2. 추천인원 : 각 단체별 2인(남·여 각 1인) 추천

※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추천 요망

3. 추천후보 결격사유 (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)

-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
-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

4. 추천기한 : 2017. 12. 15.(금) 18:00까지

5. 추천서류 등

- (추천서류) 추천단체 및 후보를 확인·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
  - 추천공문 1부
  -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
  -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(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 포함) 1부
  -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
  -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
  - 추천후보자 이력서(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 1부
  -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
- (제출처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우편번호, 13809)  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(02 - 2110 - 1451, 1296)
- (제출방법)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6. 위원 임기 : '17. 12월 ~ '20. 12월(3년)

7. 위촉 예정일 : '17. 12. 29.(금)

8. 기타

-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([www.kcc.go.kr](http://www.kcc.go.kr))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